

|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①과세기간              | 년               | 월     | 일   | 상        | 호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년               | 월     | 일   | ②사업자등록번호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③성명 |          |         |
| 1. 공제세액계산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④구분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⑤계산내역 |     |          | ⑥공제대상세액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합계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2. 당기 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⑦구분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합계      |
| ⑧과세기간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당기공제<br>대상세액       | ⑨당기분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⑩이월분 (=⑪~⑳의 합계)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⑪ 1차년도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⑫ 2차년도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⑬ 3차년도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⑭ 4차년도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⑮ 5차년도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⑯ 6차년도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⑰ 7차년도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⑱ 8차년도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⑲ 9차년도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⑳ 10차년도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⑳공제되지 않은 세액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㉑공제세액 (=⑨+⑩-㉑)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㉒소멸된 공제세액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㉓이월액 (=㉑-㉒)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|

## 작성 방법

- 이 서식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([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])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2에 따른 세액공제([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])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작성합니다.
- ④·⑦구분란: 아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의 명칭을 적습니다.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조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5조(2020.12.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     |
|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7조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7조의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탁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8조의3 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0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2조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9조 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통합투자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5조(2020.12.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    |
|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| 제25조의4(2020.12.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  |
|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| 제25조의5(2020.12.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  |
|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5조의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6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| 제29조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| 제29조의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| 제29조의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청년고용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9조의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9조의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0조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0조의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0조의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중소기업 통합 승계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1조 제6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법인전환 승계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2조 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| 제96조의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99조의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04조의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04조의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04조의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| 제104조의18(2020.12.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|
|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04조의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| 제104조의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| 제104조의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22조의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     | 제122조의4 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              | 제126조의3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                 | 제126조의7 제8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⑥공제대상세액란: 세액공제별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계산기준을 참고하여 공제대상세액을 계산합니다. 공제한도를 적용받거나 법령의 개정으로 공제율 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을 확인하여 계산합니다.
- ⑧과세기간란: 세액공제가 발생한 과세기간을 적습니다. 이월되는 공제의 과세기간이 2개 이상인 경우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⑨당기분란: ⑥공제대상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- ⑩이월분란: 전년도에서 이월된 세액공제를 적습니다.
- ⑪~⑳란: ⑩이월분이 각각 해당되는 연도에 적습니다.
- ㉑공제되지 않은 세액란: 최저한세조정명세서(별지 제69호서식)의 ㉑세액공제 금액을 적되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4조제2항에 따른 순서에 따라 최저한세적용 미공제액의 각 란을 조정하여 적습니다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([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])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2에 따른 세액공제([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])의 경우에는 ⑨당기분과 ⑩이월분의 합계액 중 세액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).